

제 538 호

1976. 2. 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출

원 집 : 문화공보국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14 호 :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업입학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3
제 1015 호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4
제 1016 호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10

◎ 훈 령

제 438 호 : 서울특별시동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0
---------------------------------------	----

◎ 고 시

제 15 호 : 도시계획(녹지)지적승인	11
제 16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일부변경지적승인	11
제 17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및지적승인	12
제 18 호 : 도시계획업무지구지정및지적승인	1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9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13
제 20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보도)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13
◎ 공 고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4
제 13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	14
제 14 호 : 환지에정지지정공고	15
제 15 호 : 쓰레기특별청소제의 (비수거) 지역공고	15
제 16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7
제 17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7
◎ 예 규	
제 315 호 :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취급요령개정규정	18
◎ 사 명	23

조 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14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 점 생 인

197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별표중

- 1 학군 ①도봉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쌍문, 유현" 을 공동지역 중학교 여자란 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 속여자중학교를 추가하고 ②정농지역을 정농지역, 성북

지역으로 분리하고 정농지역 남자 및 여자중학교란에 "고려중"을,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청덕", "승덕" 을 성북지역 남자중학교란에 "홍익중"을, 여자중학교란에 "동구여중"을, 국민학교 남 자 및 여자란에 "성북, 홍 익부"으로 한다.

2 학군 공동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 학교란에 "신철동"을 삭제 한다.

3 학군 성수, 화양지역 남자 및 여 자중학교란에 "실천중"을 추가하고 공동지역 여자중학 교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 부속여자중학교"를 삭제 한다.

5 학군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도곡"을 추가한다.

6 학군 ①공동지역 남 자중학교란에 "승실"을 삭제하고 "배문" 을 추가하며, 후석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신남선"

용 강남지역 남자 및 여자 국민학교란에 "당곡"을 추가한다.

②반포지역을 삭제하고 반포 지역내 중학교 및 국민학교 불·혹석지역에 추가한다.

③강남지역 남자중학교란에 "상도중"을 추가한다.

7 학군 ①당산, 구로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개봉" "영일" "영동" "구로남"을 삭제하고 공동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영동"을, 시흥대림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영일" "구로남"을 추가한다.

②시흥대림지역 여자중학교란에 "문일여중"을 삭제하고 남자중학교란에 "문일중"을 추가한다.

8 학군 ①공동지역 남자중학교란에 "수송중" 및 마포지역 남자중학교란에 "배문중"을 삭제하고 연희지역 남자중학교란에 "송실중"을 추가한다.

②불광지역 남자중학교란에 "영천중"을 "서대문중"

으로 한다.

③불광지역 남자국민학교란에 "역촌"을 삭제하고 연희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역촌"을 불광지역 남자국민학교란에 "은평"을, 동 지역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에일"을 추가한다.

9 학군 남자중학교란에 "오류중"을 추가하고 "유한중"을 삭제하며, 남자 및 여자국민학교란에 "개봉"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 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제 1015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 점 생

인

1976년 1월 29일

<p>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 제 2 항 중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표 (1) 학군별 고등학교 및 소속 중학교</p>		<p>제 3 조 제 2 항 중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1976 학년도 부터 시행한다.</p>		
학군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공 동	<p>경 동 북 신 부 동 동 배 배 보 서 성 송 양 용 이 인 장 중 중 한 흥 환 휘</p>	<p>서울특별시 전체중학교</p>	<p>경 기 성 금 덕 백 보 서 상 명 수 속 송 신 이 이 중 정 진 창 풍 혜</p> <p>기 성 관 성 화 성 을 대 도 명 의 광 화 부 양 신 명 덕 문 화</p>	<p>서울특별시 전체중학교</p>
계	25 교		20 교	

학군	남 자		여 자	
	고등학교	소속중학교	고등학교	소속중학교
1 학군	고려 대일 서라벌 신일 영훈 용문	삼선, 동성 고명, 보성 용문, 경신 동대부, 고려 동익, 신일 영훈, 서라벌 영광, 광운 남대문, 승덕 도봉, 수유	성신 성신사부 창문 한성	성신, 정신 한성, 성신부 동구, 고려 도봉, 수유 정희, 영훈 성암, 영광 도봉(중), 창문 서울사대부
	6 교	18 교	4 교	15 교
2 학군	경희 대광 서울사대부 용호 영훈	대광, 성일 동대문, 광신 서울사대부 경희, 장안 전농, 청량, 중화 휘경, 재현 면목, 중랑	경희 동덕 서울사대부 휘경	동덕, 경희 정화, 면목 해원, 송곡 영란, 한샘 동대문, 해성 휘경, 삼계
	5 교	14 교	4 교	12 교

학군	남 자		여 자	
	고등학교	소속중학교	고등학교	소속중학교
3 학군	수도사대부 영동 한영 오산 경기	성동, 덕수 한양, 광희 한영, 동북 장충, 대경 수도부, 석수 전국, 천호 동신, 일신 배재, 영동 배명	무학 시용사대부 한양 명성	무학, 한양 평당, 서울사부 계성, 승의 옥수, 간호 명성, 천호 영피, 일신 영동, 성수 수도부
	5 교	17 교	4 교	15 교
4 학군	관악 성남 여의도 영등포 오산 장흥 중대부	송실, 용산 선린, 신용산 단국, 오산 동양, 중대부 상도, 영등포 장훈, 분천 강남, 성남 당산, 영도 남강, 동일 강서, 신림 공항, 유한 한강, 여의도	상명 서문 성실 영등포 중대부	선광, 용산 보성, 상명 상도, 중대부 선림, 강남 영등포, 봉천 봉영, 한강 문일, 동일 강서, 대림 화곡, 오류 여의도, 대방
	7 교	24 교	5 교	20 교

학 군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5 학 군	경 성 마 포 여 의 도 광 성	경 성, 광 성 승 문, 마 포 이 대 부, 동 도 경 서, 배 문 환 일, 양 정 예 원, 한 성 중 앙, 중 동 수 송, 휘 문 대 동, 수 도	홍 익 명 지	중 앙, 성 정 금 란, 홍 익 마 포, 성 산 이 대 부, 서 울 창 덕, 예 원 덕 성, 숙 명 진 명, 풍 문
	4 교	18 교	2 교	14 교
6 학 군	대 성 명 지 충 암	중 앙, 중 동 수 송, 휘 문 대 동, 청 운 보 인, 대 신 영 천, 영 락 대 성, 연 서 연 회, 명 지 충 암, 인 창	동 명 명 지 신 일 예 일 성 정	덕 성, 숙 명 진 명, 풍 문 성 정, 배 화 동 명, 상 명 부 문 영, 예 일 정 원, 선 일 명 지, 연 회 충 암
	3 교	16 교	5 교	15 교

별표 (2) 중학교 학구 (학군) 또는 학군 소속중학교와 배정 배제 후기학교				
중학교 학구 (학군) 의 해당중학교			배정 배제 고등학교	
학구 (학군)	남	여	남	여
상재 학구	재 현	상 개	승문, 이대부 배문, 환일 영훈, 용문	이대부, 보성 신광, 서울 상명사부, 금란
천호지역 (4학군)	천 호 동 신 일 신	천 호 영 파 일 신	승문, 이대부 배문, 환일 오산	이대부, 보성 신광, 서울 상명사부, 금란
영동지역 (5학군)	영 동	영 동	승문, 이대부 배문, 환일	이대부, 보성 신광, 서울 상명사부, 금란
오류지역 (9학군)	유 한	오 류	경동, 배명 성동, 장춘 홍익	상명사부
화곡지역 (10학군)	공 항	화 곡	경동, 배명 성동, 장춘 홍익	상명사부 서문

국무총리의 승인용 인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2월 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16 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중 " 100분의 5 " 를 " 100
분의 3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2월 1일 부터
시용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동 도급경비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38 호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동 도급경비 사무처
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중 " 특별판
공비 " 를 " 정액판공비 " 로 한다.

제 3 조 제 2 항중 " 특별판공비 " 를
" 정액판공비 "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고 시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

도시계획 (녹지) 지적승인

- 1. 건설부 고시 제 8 호 (76.1.21) 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녹지) 에 대한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76 년 1 월 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 (녹지) 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월계동녹지	도봉구 월계동 43 번지 일대	2,134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㉕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공원) 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8 호 (76.1.21) 로 일부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하여 일부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76 년 1 월 26 일

서울특별시장

지적변경 3. 시내역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기정면적	변 경	변경후
당산계1아동공원	영등포구당산동3가 365	19,560	(감) 4,960	14,600
서울운동장공원	중구 을지로7가4번지의	81,218	(증) 110,064	91,282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㉞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가. 지하보도 시설조서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	연장	면적
신설	회현동 2가 지하보도 (상가겸용)	회현동 2가 광장	22-53.5 m	203 m	6,080 m ²

㉞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
 도시계획업무지구지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업무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대통령령 제 7753 호
 가. 지구지정 및 지적승인조서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업무 지구	강남구 삼성동 일부	808,000 m ² (244,420명)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구청에 보관함.

㉞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223 호 (75.12.31)와 관련하여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가. 시설조서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번호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59	구이광장(교농광장)	성동구 광장동 산 81-4외 4필지	7,130㎡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㉞ 서울특별시고시제 20 호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령 제 7753 호 (75.8.22) 의

가. 지하도시설조서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목원	연장	면적
기정	소공동 지하보도	소공동-미도파방향	13 ㎞	25 ㎞	325 ㎡
변경	(지하보도및지하상가)	소공동-명동지하도	12 ㎞	215 ㎞	2,580 ㎡
기정	한국냉장앞지하보도	노량진-한국냉장	4 ㎞	140 ㎞	560 ㎡
변경		노량진-한국냉장	4 ㎞	100 ㎞	40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5 호 (74.9.16) 로 시행 허가된 도시계획 (학교)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동법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년 1 월 26 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지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175 의 2 부근
2.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학교)
3. 사업시행면적 : 13,78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기간 : 1974.9.16 ~ 1975.12.31
6. 준공도면 : 준공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3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 업체들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한다.

1. 지정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6년도 수출목표액	비고
428	전원콘멘서 공업 (주)	이기영	성동구성수동1가 13-188	콘멘서	\$ 260,000	
1010	대양염직 공업 (주)	최경수	도봉구미아동 90-3	염색가공	\$3,000,000	

㉞ 서울특별시공고제 14 호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가 시행중인 망우추가 및 창동수가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 규정이 외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 304 호 (75.12.26) 호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환지에정지를 별첨 도서와 같이 지정하였기 농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 가름한다.

197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첨부: 환지에정지 지정조서-별첨(생략)

㉞ 서울특별시공고제 15 호

쓰레기특별청소제외(비수거) 지역공고

오물청소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청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쓰레기 비수거 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7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비 수 거 지 역 (동)

구및출장소	동 명	통 명	구및출장소	동 명	동 명
동대문 도봉 강남	장안동	전지역	천호	압사동	전지역
	중계동	"		하일동	"
	내곡동	"		방이동	"
	일원동	"		가양동	"
	잠실1동	"		파해동	"
	잠실2동	"			
	잠실3동	"	계	12	

일부비수거지역 (동) (기동수거지)

구및출장소	동 명	통 명	구및출장소	동 명	통 명	
동대문	망우동	1-3, 11-14	영등포	신정 1 동	1-10 26-28	
	신내동	1-9		신정 2 동	1-8	
	면목 3 동	35-38		가리봉동	24-27	
	면목 4 동	40-43		독산동	3-12, 15-20	
	면목 5 동	11-23		시흥 1 동	12, 14-18, 34	
	상봉동	1-14		시흥 2 동	38, 57, 58, 60, 63, 64	
	묵동	1-6		시흥 3 동	1-3, 8	
마포	7			고척동	20-25, 31	
	성산동	17-29, 33-38		개봉동	1, 8, 15, 25	
	상암동	1-3, 9-10		오류 1 동	24-30	
강남	2			오류 2 동	1-6, 14-20	
	양재동	2-6		11		
	도곡동	7-15		양서	화곡본동	4, 9, 16-23
	잠원동	4-7 9-12			화곡 1 동	26, 29
	서초동	4-10	화곡 2 동		6-9 27	
	세곡동	2-5	염창동		12, 18-22, 24, 25	
5		묵동	23, 34			
은평	불광 1 동	8-10, 21-24	방화동		28-31	
	불광 2 동	1, 6, 12	공향동	일부지역		
천호	2		발산동	"		
	성내동	1, 38, 39, 40	신월동	"		
	길동	1-9	9			
	송파동	11-19	계	42		
	마천동	1-3, 24-29				
	거여동	8, 18, 22, 1-7				
명일동	1-9	6				

1)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

환지계획 일부 변경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역촌, 시흥포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 47 조, 제 55 조, 제 33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1. 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역촌추가, 시흥포구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사당동, 신탄동일부토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일부토지 동대문구 용암동일부토지

3) 필지수 : 37 필

4)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2) 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3 호의 규정에 위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 1. 30

서울특별시장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소 재 지	취 소 사 유
일광전기공업사	유 승 찬	1-1-19	동대문구 장안동 173-24	법정기간내 형식 승인 미취득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제 315 호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취급
요령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취급 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6. 1. 3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

제 1 조 (목적) 이 요강은 직업안정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직업안
정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한다.

제 3 조 (업무범위) 구청장, (출장소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직업 안내소 및 1, 2종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휘감독과
처분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 4 조 (문서의 서식) 직업안정 업무
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
1 호 내지 제 33 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무허가직업소개행위단속) ① 구
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한 유로 또는 무
로의 직업안내사업을 철저히 단속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 단속기간을 연 2 회
설정하여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제 6 조 (공공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

① 안내소에서 취업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직자의 생활 근거지를 중
심으로 통근지역내에 취업알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근지역이라 함은 일반사회 봉념
상 당해 사인장에 통근하여 통상 8
시간 근무가 가능한 범위의 지역권
을 말하며 지역권은 임금, 근로조건
교통수단, 통근시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③구직자에게는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④제 1 항의 취업알선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인, 구직접수 2. 직업지도 3. 취업알선 4. 개별취업알선 5. 사후지도 <p>⑤취업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알선 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통지서 및 소개장을 발급하여 구인자에게 안내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 7 조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p> <p>①직업 안내소의 취업알선은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2 중 직업안내소장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19 조에 의한 구인표 및 구직표에 의하여 구인 및 구직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2 중 직업안내소장은 구인, 구직허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중</p>	<p>1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번호 발행처 등) 2. 노동청장이 발행하는 기능사 수첩 사본 3. 신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인감 증명 첨부) 4. 영업감찰 사본 <p>④ 2 중 직업안내소장은 취업 알선 후 반드시 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 8 조 (구인구직 접수) (구인 및 구직신청은 구인표 및 구직표에 의하여 접수하고 구인접수대장 및 구직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구인 및 구직자에게 접수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우편에 의한 구인 및 구직요청을 접수하였을 비에도 또한 같다.</p> <p>제 9 조 (구인표 및 구직표 관리) 구인표 및 구직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 직종별 (세분류) 로 분류 관리 하되 분류된 것은 이를 1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취업을 알선한 자, 구직 또는 구인을 취소한 자, 신청 후 60 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표와 구인표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	---

제 10 조 (종사자 소양교육) ① 구청장은 관내 직업안내소 종사자(소장포함)에 대한 소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소양교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새마을 교육 및 안보교육
2. 직업안정법령
3. 직업안정업무처리 요강 및 실무

③ 구청장은 소양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종료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안내소의 직업상담) ① 1, 2종 직업안내소장은 안내소에 직업상담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직업상담은 반드시 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직업 상담자는 구직표를 기초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을 판단하여 직업선택을 도와야 한다.

④ 직업 상담자는 취업알선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지득하여서는 안된다.

⑤ 직업 상담의 결과와 기타 필요한

관련 정보는 구직카드 비고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12 조 (신원조회) 구청장은 1, 2

종 직업안내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의 신원조회시에는 직업안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회성과 공공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내요금) 안내요금은 노동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14 조 (요금표등비치) ① 2종 안내소장은 요금표 및 티가증을 반드시 일반의 열람에 편리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기실에는 (안내소의 지도감독기관은 ○○구청 사회과 입니다.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인, 구직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부착한다.

제 15 조 (행정처분 기준) 구청장은 직업안정관계법령을 위반 허가나 지시(명령)사항을 위반한 1종 및 2종 직업안내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다만, 요금에 관한 사항은 2종
직업안내소에 한한다.

1. 위 소

가. 법제 29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나. 무허가 소개업자와 결탁하여
직업안내 행위를 한 자

다. 소정요금 이외의 안내요금을
징수한 자

라. 점업 금지 조항에 위반한 자

마. 운영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자

바.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행위
를 한 자

사. 1년중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허가취소를
진달한다.

3. 영업정지 30일

가. 소정의 장부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나. 보고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다. 사전 승인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4. 영업정지 10일

가. 안내요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내를 한 자

나. 구, 출장소에서 실시하는 보
육훈련에 불응한자

다. 제 7조 제 3항에 의한 구인,
구직자의 실원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직업안내를 한자

라. 구인표, 구직표를 작성 비치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자

마. 제 14조에 의한 요금표등을
개첨하지 아니한자.

바. 전 각호의 경우 이외의 행정
명령을 위반한 자

제 16조(고발의 병행)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자중 직업안정법
제 29조 내지 제 33조의 벌칙조항
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과 병행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한다.

제 17조(보고) ①구청장은 공동직업
안내소및 1,2종 직업안내소및 각
종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과 지도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② 구청장은 공공직업 안내사업 및 1,2종 직업안내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하거나 승인 및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결과 보고서 계 12 호서식 : 1,2종 직업안내사업 허가사항 변경승인 및 폐기 결과 보고 계 13 호서식 : 구인표 (안내소) 계 14 호서식 : 구직표 (") 계 15 호서식 : 접수증 (") 계 16 호서식 : 구인접수대장 (안내소) 계 17 호서식 : 구직접수대장 (") 계 18 호서식 : 직원명부 (") 계 19 호서식 : 허가증 계 20 호서식 : 2종직업안내 사업허가 신청서 계 21 호서식 : 공공직업안내 1,2종직업안내 승인 허가) 사업허가 변경 신청서</p>
<p>부 칙</p>	
<p>(1) (시행일)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폐지규정) 이 요강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예규 제 281호 직업안정업무 취급요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 1 호서식 : 취업알선대장 (안정소)</p>	
<p>제 2 호서식 : 취업알선통지서 (안정소)</p>	
<p>제 3 호서식 : 소개장 (안정소)</p>	
<p>제 4 호서식 : 구인표 (")</p>	
<p>제 5 호서식 : 구직표 (")</p>	
<p>제 6 호서식 : 구인접수대장 (안정소)</p>	
<p>제 7 호서식 : 구직접수대장 (")</p>	
<p>제 8 호서식 : 접수카드 (안정소)</p>	
<p>제 9 호서식 : 직종별 구인 구직 취업 현황</p>	
<p>제 10 호서식 : 직업안내소 지도현황</p>	
<p>제 11 호서식 : 1,2종 직업안내소 허가</p>	
<p>신청서</p>	
<p>제 12 호서식 : 공공직업안내 1,2종직업안내 승인 허가) 사업허가 변경 신청서</p>	
<p>제 13 호서식 : 공공직업안내 1,2종직업안내 사업폐지신고서</p>	
<p>제 14 호서식 : 공공직업안내 사업승인 신청서 (지방자치단체)</p>	
<p>제 15 호서식 : 1종 직업안내사업 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p>	
<p>제 16 호서식 : 1종 직업안내사업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서</p>	
<p>제 17 호서식 : 근로자 공급사업허가 신청서</p>	

<p>제 27 호서식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서</p> <p>제 26 호서식 : 근로자공급사업 적지신고서</p> <p>제 29 호서식 : 근로자 (직접 위탁) 모집허가신청서</p> <p>제 30 호서식 : 근로자 (직접 위탁) 모집허가신청에 관한 의견서</p> <p>제 31 호서식 : 허가증</p> <p>제 32 호서식 : 근로자직접모집 신고서</p> <p>제 33 호서식 : 취업알선대장 (안내소)</p> <p>제 34 호서식 : 행정처분 통지서</p>	<p>◎ 1976. 1. 29</p> <p>농 지 과 지방농림 김진찬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호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 1976. 1. 30</p> <p>도봉구보건소 지방약무 이춘수 기 원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p> <p>◎ 1976. 1. 31</p> <p>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원재은 연 구 사</p> <p>지방보건기사에 임함 12 호봉을 급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p> <p>◎ 1976. 2. 2</p> <p>총 무 과 지방기계 남상갑 기 원 보</p> <p>운수 3 과 근무를 명함</p> <p>영등포수원지 지방행정 조순호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윤 산 구 지방행정 박인두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이창기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사 령</p>	
<p>◎ 1976. 1. 27</p> <p>공무원교육원 서기관 이상목 교 수 부</p> <p>서기관에 임함.</p> <p>성동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서울특별시 부이사관 김진원 중로구청장</p> <p>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장에 보함.</p> <p>서울특별시 부이사관 김동현 성동구청장</p> <p>서울특별시 중로구청장에 보함.</p> <p>서울특별시 부이사관 이희형</p> <p>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에 보함.</p>	

<p>도 봉 구 지방행정 이항원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비상계획보좌관 별정직 4급 김태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전원길 주 서 기 보</p>	<p>양 정 과 행정서기 정태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1976. 2. 3 건축지도과 지방건축 이구라 주 사</p>
<p>서 대 문 구 지방행정 김정배 주 서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주택건설 지방건축 최규환 주 사 업 소 기 사</p>
<p>중 구 지방행정 지광남 주 서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급 수 과 지방토목 조병성 주 기 사</p>
<p>업 무 과 지방행정 채병훈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북지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용 산 구 지방토목 김봉식 주 기 원</p>
<p>중 구 지방행정 장국현 주 사 무 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양 정 과 지방농림 김규태 주 기 사</p>
<p>서 대 문 구 지방행정 김두만 주 사 무 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특도수원지 지방기재 이철 주 기 원 보</p>
<p>동 대 문 구 지방행정 문병규 주 사 무 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